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74
----------	-------

발의연월일 : 2024. 1. 12.

발 의 자 : 전주혜 · 우신구 · 유상범
조수진 · 유경준 · 윤주경
이명수 · 홍문표 · 이태규
정경희 · 박대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재판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정치인 또는 시국사건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국민참여 재판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며 소위 '판사 쇼팽'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됨. 더욱이 재판의 지연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들에 의해 피고인 측의 고의적인 방어전략으로도 활용되며, '지연된 판결, 지연된 정의'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 및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재항고는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사건을”을 “그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배제결정)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9조(배제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 및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재항고는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u>
제36조(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u>사건을</u>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공판준비절차) ① ----- ----- ----- ----- <u>그 의사</u> <u>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을</u>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